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06 구합 20907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원 고 유○○
 춘천시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근용
피 고 환경부장관
 소송수행자 성수호, 김문화
변 론 종 결 2006.11.1
판 결 선 고 2006.11.15

주 문

- 피고가 2006.3.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내지 4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비공개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3.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비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캠프페이지(Camp Page)는 1955.경부터 춘천시에 주둔해 온 주한미군기지이다.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기지 재배치 전략에 따라 2002.경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and Partnership Plan)에서 캠프 페이지 폐쇄가 결정되었고 2004.7.경 제10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에서 캠프페이지의 2005.조기반환이 결정되어 반환절차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캠프 페이지의 기지반환에 따른 오염정화책임의 소재 및 오염정화수준에 관한 한미

양국의 입장차이로 인해 아직도 반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나. 춘천시민인 원고는 2006.2.27. 피고에게 별지 1 내지 5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3.10. 별지 1 내지 4 기재 정보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 합의서, 이하 ‘이 사건 부속서 A’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별지 5 기재 정보에 관하여는 환경부의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피고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 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규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위임명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부속서 A는 한미 양국 정부대표들의 합의사항이 아니므로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은 바도 없어 국내법상 효력이 있는 조약으로 볼 수 없고 SOFA(주한 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가 SOFA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기초하여 합의한 사항으로서 행정규칙과 유사한 성격의 내부지침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부속서 A는 정보공개과정에 있어 한미 환경분과위원회 양측 위원장의 승인을 요하도록 하여 추가적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일 뿐이며, 자료 자체를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 정보는 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등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도 아닌 외교관계에서 파생된 사실행위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사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할 여지는 없다.

나. 관계 법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 합의서)

서명주체 : SOFA 합동위원회 양측 위원장(외교부 북미국장과 주한미군 부사령관)

서명일자 : 2003.5.30.

1. 관련근거

- 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 및 주한미군지위협정('66.7.9)
- 나.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01.1.18)
- 다.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01.1.18)

2. 목적

본 절차는 '02.1.18 이후 공여되거나 반환하기로 한 시설과 부지에 대하여 조사 및 치유와 관련하여 조사 및 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적합한 접근을 명시하고자 한다. 이 절차 내 어떤 내용도 관련 근거에 저촉되거나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7. 언론 보도 및 대중공개

본 절차에 의한 어떠한 언론 또는 대중에 대한 정보 배포 또는 본 절차에 의하여 수행된 특정 정보 교환 및 조사 정보 배포는 환경분과위원회 양측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판단

(1) 별지 1 내지 4 기재 정보에 관하여

(가) 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속서A의 서명주체는 SOFA 합동위원회 양측 위원장인 외교부 북미국장과 주한미군 부사령관으로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바 없고, 위 부속서 제2항은 '본 절차는' 02.1.18. 이후 공여되거나 반환하기로 한 시설과 부지에 대하여 조사 및 치유와 관련하여 조사 및 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적합한 접근을 명시하고자 한다. 이 절차 내 어떤 내용도 관련 근거에 저촉되거나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부속서 A의 체결에 관하여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바 없고, 그 내용 또한 공여지 환경조사 및 오염치유와 관련한 조사 및 정보의 교환을 위한 절차의 합의일

뿐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속서 A를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속서 A는 환경분과위원회의 양측위원회의 공여지 환경조사 및 오염치유의 절차에 관한 내부지침적 성격의 합의서로서 일반 국민에 대한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부속서A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속서 A를 SOFA의 이행을 위하여 정부 간에 합의한 문서로서 SOFA 가 부여한 테두리 내에서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법 제9조 제1항 제1호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부속서A의 제7항은 언론 또는 대중에 대한 정보 배포시 양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부 절차에 관한 규정이지 특정한 정보를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이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별지 1내지 4 기재 정보가 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에 관한 사항이 아님은 명백하고 위 조항에서 말하는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정보는 춘천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기지인 캠프페이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의 주체, 일시, 항목, 내용, 결과, 처리 계획, 조사비용 및 비용부담주체에 관한 것인바, 이것이 국가 간의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 하더라도 현재 한미 양국 정부 간에 주한미군 반환예정기지의 오염치유수준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 정보의 공개가 위 협상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협상의 결과가 대한민국에 불리하도록 작용할 것이라는 데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이상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갑6호증, 갑7호증의 1,2,갑9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미국방부가 United States Code, Section 2706 of Title 10(연례의회보고) 및 Section 9620(e)(5), 9621(e) of Title 42(연방정부시설)에 근거하여 미국내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실태를 조사한 DERP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보고하는 한편 미국방부 관련 웹사이트를 통하여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는 사실, 주한미군 측도 2006.4.7. 이 사건 부속서 A의 제7항에 위반하여 환경오염치유 문제와 관련하여 전체 반환예정기지 안의 지상, 지하 유류 저장탱크를 제거하는 것을 뼈대로 한 반환실행계획을 한국 측과의 사전협의 없이 언론에 공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 및 미국 정부의 대외정책기조 및 양자간 협상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캠프페이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의 주체, 일시, 항목, 내용, 결과, 처리계획, 조사비용 및 비용부담주체에 관한 위

정보가 원고에게 공개된다고 하여 현재 진행 중인 주한미군 반환예정기지의 오염치유수준에 관한 협상의 한쪽 당사자인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와의 위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협상의 원활한 진행에 비협조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별지 5 기재 정보에 관하여

법 제2조 제1호는 동법에서의 ‘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 실체가 존재하는 것에 한정된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청구인은 그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직접증거에 의하여 당해 정보를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실체가 존재하고 공공기관이 이를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가 별지 5기재 정보를 작성·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정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1 내지 4 기재 정보에 관한 피고의 비공개결정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준

판사 윤경아

판사 정준화

별지

1. 춘천 캠프페이지 환경오염조사 담당기관, 조사일, 조사항목, 조사내용
2. 춘천 캠프페이지 환경오염조사 분석결과(한,미 양측 분석결과)
3. 조사결과 처리계획(치유비용 포함)
4. 춘천 캠프 페이지 환경오염조사에 따른 한국과 미국의 조사비용 및 조사비용 부담주체
5. 반환에 따른 양해각서 체결 여부와 그 내용
- 이상-